

# 아시아문화연구소규정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본 대학교 부설 아시아문화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)** 본 연구소는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(이하 '본 연구소'라 한다)라 칭한다.

**제3조(소재)** 본 연구소는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내에 둔다.

## 제 2 장 사 업

**제4조(연구소의 목적)** 본 연구소는 아시아문화 각 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관련 학문 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2.05.25)

**제5조(사업)** 본 연구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학술연구 : 본 연구소의 설립 목적과 부합하는 연구로서 개별, 공동연구 수행(개정 2012.05.25)
2. 용역사업 : 제5조 제1항에 관련된 사업에 관한 용역
3. 관련학문 분야의 논문집, 정기간행물 및 학술도서 발간
4. 국내의 학술교류, 공동연구 및 연구발표회 개최
5.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
## 제 3 장 조 직

**제6조(조직)** ①본 연구소는 소장, 간사, 행정실 및 학술연구 분과로 구성된다. (개정 2012.05.25.)

②본 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편집위원회, 운영위원회를 두며,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.(개정 2012.05.25.)

③행정실에는 행정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(신설 2012.05.25.)

**제7조(직무 및 임원의 선출)** ①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, 본

## 5-1-2~2 제5편 부설연구기관

대학교의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 2012.05.25)

②고문은 본 연구소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며, 국내외 저명학자 또는 전임 소장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.(개정 2012.05.25)

③행정실은 본 연구소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각종 행정지원 및 대외 교류 지원 등을 담당한다.(신설 2012.05.25)

**제8조(임원의 임무 및 임기)** ①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간사는 소장의 지시에 따라 제반업무를 처리한다.

②감사는 본 연구소의 운영, 실적, 회계 등의 업무를 감사한다.

③운영위원은 본 연구소의 운영 업무를 관장한다.

④소장 및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## 제 4 장 연구위원 및 연구교수, 연구원

**제9조(전임교원)** ①연구소는 약간 명의 전임교원을 둘 수 있다.(개정 2012.05.25.)

②연구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.(신설 2012.05.25)

③연구위원은 본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참여한다.(신설 2012.05.25)

**제10조(연구교수 및 연구원 등)** ①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연구교수, 연구원,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(개정 2012.05.25)

1. 본 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주 업무로 담당하는 연구교수 및 책임연구원(개정 2012.05.25)

2. 외부인사 중 본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위촉되어 연구에 참여하는 특별연구원(개정 2012.05.25)

3.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본 연구소 연구업무를 보조하는 일반연구원(신설 2012.05.25)

4. 학사과정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본 연구원 업무를 보조하는 연구보조원(신설 2012.05.25.)

② 연구교수, 책임연구원, 일반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보수 등 제반 경비는 외부지원금과 교내지원 및 연구소 재정으로 충당한다.(신설 2012.05.25.)

③ 특별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.(신설 2012.05.25.)

## 제 5 장 위원회 및 사업단

**제11조(위원회 설치)** 본 연구소는 연구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.(개정 2012.05.25)

1. 운영위원회(신설 2012.05.25.)
2. 편집위원회(신설 2012.05.25.)
- ② (삭제 2012.05.25)
- ③ (삭제 2012.05.25)

**제12조(운영위원회)** ①운영위원회는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다.(개정 2012.05.25)

- ②운영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.(개정 2012.05.25.)
- ③위원장은 소장이 겸임한다.(신설 2012.05.25)
- ④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(신설 2012.05.25.)
  1. 연구소의 운영계획
  2.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
  3.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
  4. 연구소의 규정과 세칙의 제정 및 개정
  5.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**제13조(편집위원회)** ①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소 기관지 『아시아문화연구』 간행을 위한 기획, 심사, 발간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며,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조직한다.(개정 2012.05.25)

- ②편집위원은 교내외 및 국제학계의 아시아문화 연구와 관련하여 업적이 탁월한 연구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.(개정 2012.05.25)
- ③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.(개정 2012.05.25.)
- ④편집위원회에 대한 기타 사항은 「아시아문화연구간행규정」 및 「아시아문화연구원편집위원회규정」에 따른다.(신설 2012.05.25.)

**제14조(HK사업단)**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지원사업(Humanities Korea Project. 이하, 'HK사업')의 수행을 위해 HK사업단을 둘 수 있으며 소장이 단장을 겸직할 수 있다. 다만, HK사업에 대한 운영 규정은 따로 정한다.(신설 2012.05.25)

## 제 6 장 재 정

**제15조(경비)**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(개정 2012.05.25)

5-1-2~4 제5편 부설연구기관

1. 국고 보조금
2. 교내외 학술연구비 지원금
3. 연구용역비
4. 기타 수익금

**제16조**(회계년도) 본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년도와 같다.

**제17조**(예·결산의 승인) 매 회계년도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18조**(운영세칙)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2년 05월 25일부터 시행한다.